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438호

나.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강석주 의원 등 15명 찬성)

다. 발의일자 : 2023년 01월 28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02월 06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1년 단위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성실성 담보를 위하여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위촉 해제 사유로 신설함(안 제8조의2).

나. 위원회 운영 관련 보고사항에 전년도 정비실적을 추가함(안 제16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의 1년 단위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전년도 위원회 정비실적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발의됨.

나. 각종 위원회 현황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 2022년말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254개로, 조례 신설과 행정사무의 전문화·다양화, 거버넌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서울시 각종 위원회 현황 >

(단위 : 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위원회 수	194	203	217	222	248	254
증감	+9	+9	+14	+5	+26	+6

○ 지난해 위원회 개최 회의 수는 총 2,209회(위원회당 평균 9.3회)로, 이 중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는 전체의 15.3%인 39개임.

- 특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위원회의 미개최 비중이 74.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미개최 위원회 현황 >

(단위 : 개)

설치 근거	1년간 미개최(20)	2년간 미개최(11)	3년간 미개최(3)	4년간 미개최(5)
법령(10)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조례(29)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강정노동자관리위원회 국악진흥위원회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민주시민교육지문위원회 사회교보생업심의회 서울시농산물안전위원회 서울시통영발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 위원회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시민행복위원회 어린이놀이환경 조성위원회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한강시민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창업정책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희망경제위원회 사회주택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DMC기획위원회

○ 위원 출석률을 살펴보면, 출석률 50퍼센트 미만 회의는 20회(서면 8회, 출석 12회)로, 주로 회의 출석에서 자유롭고 구속력 없는 의사결정구조를 지니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로 조사됨.

< 출석률 50퍼센트 미만 회의 현황 >

구분	출석률			
	계	30%미만	30~40%미만	40%~50%미만
	20회	3회	4회	13회
서면	8회	3회	2회	3회
출석	12회	-	2회	10회

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

(1) 위촉 해제 사유 신설(안 제8조의2)

- 안 제8조의2제1항은 위원의 해촉 사유에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신설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u> 7. (현행 제6호와 같음)

- 이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출석률을 강화하여 위원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력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음.

- 다만, 출석률의 기준이 되는 1년 단위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개정안	수정의견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5. (생략) 6. <u>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u> 7. (생략)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개정안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6. <u>1년 단위(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u> 7. (개정안과 같음)

- 안 제8조의2제2항은 출석률 저조에 따른 위원 해촉의 예외 사유로 1년 단위 회의 개최횟수가 1회 또는 잔여임기 1년 미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두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신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u>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u>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횟수가 1회인 경우</u></p> <p style="text-align: center;">2. <u>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을 적용이 어려운 경우</u></p> <p style="text-align: center;">3. <u>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u></p>

- 이는 직무태만과 무관한 임기 부족과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사유로 출석률 50퍼센트 적용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확실적인 위원 해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 한편, 현행 조례에서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¹⁾(조례 제10조제1항).
- 개정안과 같이 출석률 저조로 인한 위원회 해촉이 가능하게 되면 일방적인 긴급회의 개최 통보로 인해 위원이 부당하게 해촉될 수 있으므로 회의 개최 통보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개정안	수정의견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u>15일 전까지</u> ----- -----

1)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수정의견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위원회 운영 관련 보고사항에 전년도 정비실적 추가(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매년 6월 말까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정비계획에 전년도 위원회 정비실적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16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 ----- 제14조제1항----- ----- ----- ----- 정비계획 및 전년도 정비실적과 함께 ----- ----- -----.

- 서울시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현황과 정비계획이 담긴 운영 평가보고서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해야 함.
- 운영 평가보고서에는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전년도 운영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다음연도 정비·운영 개선계획을 담고 있으나, 전년도 정비실적은 포함되지 않음.

- 개정안은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전년도 정비실적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비계획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입법효과가 있음.
- 다만 안 제16조는 하나의 항에서 운영 평가보고서 공개와 함께 정비계획 및 전년도 정비실적 보고 절차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절차로 항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개정안	수정의견
<p>제16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 및 전년도 정비실적과 함께 매년 6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6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① 시장 등은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제14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p>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 해촉 적용범위에 출석률 50퍼센트 미만을 추가하고, 전년도 위원회 정비실적을 보고하도록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개별 조례에 위원 해촉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있어(조례 제8조의2)²⁾ 위원회 간 해촉 기준의 정도가 상이해 위원회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다른 위원회 조례의 일괄 정비가 필요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용우	02-2180-8062

2)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